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9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한지아의원안, 추 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3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9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한지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행	한지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 머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제외 ※'24년 세법개정으로 동 조항 신설	□ 자녀 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과 같음) -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지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현행과 같음)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추경호의원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지아의원안) 2026. 1. 1.(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지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한지아의원안 2025. 5. 13. 발의(의안번호 10494), 추경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4), 서영교의원안 2025. 9. 10. 발의(의안번호 1287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5)

□ 4건의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은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유지되어 오다가,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¹⁾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하였으나,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²⁾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1)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최근 반등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가구³⁾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111만 6천원으로 2024년 가구 소득 대비 17.8%, 가구 지출 대비 29.4%로 나타났음. 이는 2021년 월 97만 6천원 대비 14만 증가(14.3%)⁴⁾한 수치임. 따라서 자녀 양육비용 상승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과세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⁵⁾는 세 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확대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3)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4)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5.5. 참고로 동 조사는 3년 주기 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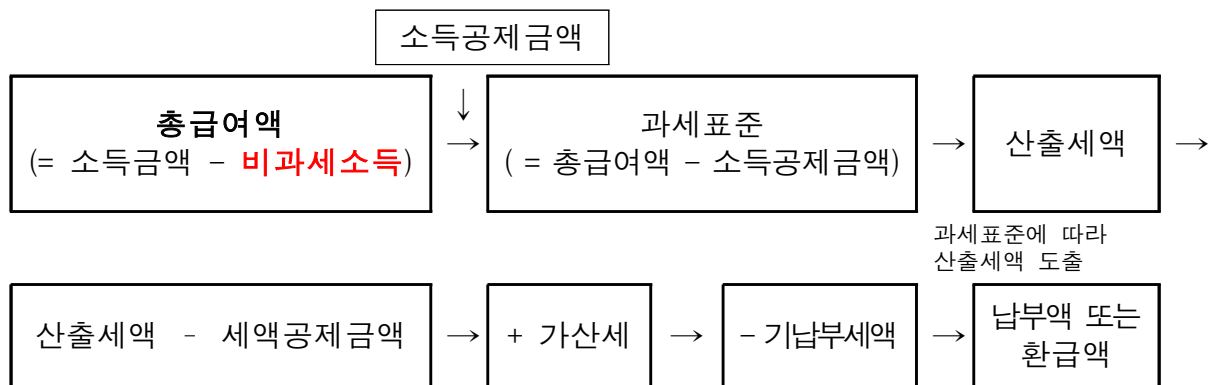
5)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23년 33.0%로 조사됨.

(2014) 48.1% (2015) 46.8% (2016) 43.6% (2017) 41.0% (2018) 38.9% (2019) 36.8% (2020) 37.2%

에 따른 수혜를 더 크게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비과세소득 확대에 의하여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현 상황⁶⁾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됨.⁷⁾

[소득세액 계산 절차]



이로 인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⁸⁾, 건강보험⁹⁾, 고용보험, 산업재해

6) 2021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28.6% 이며, GDP 대비 소득세수는 6.1% 인 반면, OECD 평균은 총 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32.4% 이며, GDP 대비 소득세수는 8.3%임. (자료: 기획재정부)

7)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8)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 조 (소득월액)

보상보험¹⁰⁾)의 감면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는 해당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약 388억원~400
 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동 항목의 신설에 따른 세수
 효과 13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필
 요가 있을 것임.

[4대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산액]

(‘25년 월보수액 대비)	근로자 부담률	사업주 부담률	요율 계	감소액(억원)
국민연금	4.5%	4.5%	9.0%	△178
건강보험	3.545%	3.545%	7.09	△140
고용보험	0.9%	1.15 ~ 1.75%*	2.05 ~ 2.65%	△40~△52
산재보험	-	평균 1.47%**	평균 1.47%**	△29
계				△388~△400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
 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되었음. 그런데 최초로 비과세
 한도(10만원)가 설정된 시기는 2003년으로, 해당 시점 대비 현재
 (2025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
 서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상향조정된 비과세 한도가 물가인상
 수준 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현행법상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지원을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table><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 ~</td></tr><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table>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table><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table>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법 §59-4②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소득법 §59-4③									
· 자녀장려세제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00-28 ~ §100-31								
부가가치세	면세	·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

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¹¹⁾,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¹²⁾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4억 53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11)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1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 참고로, 예산정책처는 한지아의원안에 따라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 285.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372.4억원(연평균 △27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경호의원안에 의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 142.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29.5억원(연평균 △245.9억원) 감소할 것으로 각각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한지아의원안	△285.7	△279.8	△274.3	△269.3	△263.2	△1,372.4	△274.5
추경호의원안	△142.9	△279.8	△274.3	△269.3	△263.2	△1,229.5	△24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650억원(연평균 130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372억원(연평균 274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예산정책처 추계 (A)	△286	△280	△274	△269	△263	△1,372	△274
기획재정부 추계 (B)	△130	△130	△130	△130	△130	△650	△130
차이 (A-B)	△156	△150	△144	△139	△133	△722	△1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